

남북경협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제성호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될 경우 대두될 대표적 법적 문제로서 다음의 5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첫째, 대금결제방법과 관련하여 청산거래 방식의 도입과 결제통화의 선정 문제이다. 둘째, 대북 투자의 보호 문제이다. 셋째, 남북한간 이익배분 및 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방지 문제이다. 넷째, 한국기업의 특허 또는 상표의 북한내 보호 문제이다. 다섯째,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에 따르는 법적 문제이다.

청산거래,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 방지 등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은 남북한 정부당국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진출 기업들이 북한측과의 합작투자계약 체결시 불가항력조항이나 분쟁해결조항 등을 정치하게 규정하거나 또는 판로의 확보, 투자자금의 다변화 등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 투자보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 북일 수교 움직임 재개 등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견지해 왔던 핵·경협 연계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정부는 동년 12월 8일 '남북경협활성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¹⁾ 정부는 이

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금년 초부터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질서있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남북경협 의지와 노력의 일단은 그동안 기업들의 대북경협 협의내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왔고, 이들 중 이미 북한과 임가공교역을 하고 있는 의류 등 경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1) 이 규정은 1994년 12월 1일 통일원고시 제94-2호로 제정되었다.

부여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5월 17일을 기해 고려합섬 불산에 대해 의류·봉제 등 4개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주) 대우에 대해 남포공단내의 3개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사업 승인을 부여한 것이다(대우의 경우 이미 1992년 10월 협력사업자 승인을 부여했음).

이로써 앞으로 남북경협은 기업인 방북단계를 거쳐 실제 사업착수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우의 경우 합영공장 설립을 위한 대북투자과 함께 시설 설비 운용과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자의 북한 체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경협 실시는 임가공교역 확대 및 남북 직교역체제로의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기업들은 북한진출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²⁾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물자교역과 대북투자 등 민족내부간의 거래와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몇가지 주요 문제에 관해서만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1. 대금결제문제: 청산거래방식 도입 및 결제통화 선정문제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될 경우 대금결제방법

2) 본고에서는 경협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교역(거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과 함께 결제통화 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남북간에 직교역과 합작투자 등이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문제의 하나이다.

일반 국제무역에서는 물물교환에 의한 거래방식(barter trade), 대용구매 거래방식(counter trade) 및 청산거래방식 등이 대금결제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³⁾ 북한과의 물물교환에 의한 교역을 추진할 경우 교역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대외결제수단(특히 미국 달러 등 경화 부족)도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에 화폐를 교환수단으로 하는 통상의 교역이나 지속적인 안정적인 구상무역이나 대용구매방식은 어려우며, 청산거래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매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1회 총괄적으로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현찰을 지불하는 방식에 의한 거래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2년 9월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라 함)에서도 청산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⁴⁾ 동 ⑨항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3) 이들에 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경제와 경제협력방향」(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9), p. 153 참조.

4)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 제1조 ⑧항은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해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에 신용장(L/C)의 직개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산계정설치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남북한간 직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외국환은행간에 환거래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먼저 환거래(코레스)계약에 의한 L/C 직개설을 정착시킨 다음 청산계정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우리 외환은행 또는 기타 은행과 북한의 무역은행, 대성은행간에 환거래계약 체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한 중앙은행간 청산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중앙은행간 금융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동 협정은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의 세부합의서 형식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청산거래방식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동서독 선례와 같이 일정수준의 액수까지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외상에 의한 물품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제도(Swing Credit System, 무이자 차월제도라고도 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신용공여 한도는 남북한간 경제규모와 반출입 실적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중앙은행간 청산거래구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① 물품거래구좌, ② 용역거래구좌 및 ③ 기타 이전거래구좌 등으로 세분하여 설치하고, 매년 연말에 1회 결산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소규모·단발성의 지속성이 없는 거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화폐를 통한 거래를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화폐(현금)에 의한 대금결제방법을 채택할 경우 어떠한 화폐를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청산결제방식에 의하더라도 역시 어떠한 통화를 남북한간 결제수단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동서독은 결제통화의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동서독이 VE(Verrechnungseinheit)라는 결제단위를 만들어 낸 바 있다. 남북한간에도 이와 같은 제3의 결제단위를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제3국 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남북한의 경우는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제3의 결제단위를 설정하는 것 보다는 스위스 프랑이나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통화를 이용하는 편이 더욱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⁵⁾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며, 둘째, 이 방법이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에게 경제력 부담을 적게 가져 오

5)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북한이 자국내에서 북한 화폐로 교환해 주는 외화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등 5가지 화폐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필자가 1992년 5월 2~3일간 평양에서 열린 두만강지역 개발관련 민간국제회의인 '평양국제회의'(일명 동북아경제포럼) 참석기간중 고려호텔 환전소에 제시되어 있는 환율표에서 확인한 것이다.

는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3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동서독의 선례를 따름으로 해서 오는 흡수통일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⁶⁾

그러나 북한의 경제력이 상당 수준 회복되면, 민족자존심의 측면에서 또한 북한의 자세 전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점차 1:1의 교환비율로 남북한 통화를 교환·통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북한통화를 외국환으로 보아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국통화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북한통화는 내국통화도 외국통화도 아닌 한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치실체의 통화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별도의 입법에 의하여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1항은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에 관하여, 동 2항은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각기 규정하고 있다. 동 2항에 의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거래가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또한 직교

역의 경우에도 초기 신뢰조성단계와 후기의 활성화단계에서는 앞에서 든 예에서 보듯이 대금결제방법도 상이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금결제방법을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1조⁷⁾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III. 대북투자 보호문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는 일차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북한측 파트너와 합작투자(합영·합작 포함) 계약서를 체결할 때 투자보장에 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 자신이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 그것은 아직도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에 입각하여 전환반도를 ‘공화국 영역내’의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허용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의 한 지역(남조선)에 소재한 기업이 내국의 다른 지역(북조선)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6) 그러나 지난 1992년 말 북한이 평양주재 외교단에 대해 ‘북한의 은행들이 미국 달러화의 송금과 예금 등에 대한 취급을 중지한 사실’을 통교환점에 비추어 볼 때 달러나 스위스 프랑화의 보유고는 극히 적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일보」, 1992년 10월 30일 1면 참조.

7)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항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동 ②항은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무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에 비해서 남조선 기업에 대해 특별히 투자우대를 인정하려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북한이 제정한 일련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 한편으로 남한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러한 입장은 노동당이나 군부의 입장인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측이 이와 같은 정치논리 외에도 경제부문, 특히 남한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정경분리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며, 그러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김정우, 임태덕 등 정무원 관료들의 입장인 것으로 보임).⁸⁾

이상과 같은 상충되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당연히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신이 합작투자 계약서 체결시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예컨대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기함으로써

적어도 북한법이 인정하는 투자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업 스스로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측과의 합작투자계약 체결시 불가항력 조항이나 분쟁 해결 조항 등 관련 조항들을 정치하게 규정하는 방식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판로의 확보, 투자자금의 다변화 등의 방식에 의해 기업 스스로 투자보장을 모색해야 한다.¹⁰⁾

그러나 소규모 대북투자나 시범적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몰라도 대규모의 합작투자에 있어서는 기업이 계약차원에서 투자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보호를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남북한 당국간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 내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보호를 법제화·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뿌리 깊은 남북한간의 불신과 정치적 리스크를 포함한 투자위험을 감안할 때, 특히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세부합의서」의 체결은 시범적 경험을 본격적인 경험단계로 끌어올리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북투자의 보호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보장장치가 긴요함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8) 제성호, "남북경협 완화조치에 따른 북한의 예상 태도 및 남북경협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대북 협상방안," 「1994 남북회담 전략개발 세미나 주제 논문 종합」(서울: 통일원 남북회담 사무국, 1994. 12), pp. 164~165 참조.

9) 제성호, 「대북투자 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65~91 참조.

10) *Ibid.*, pp. 52~65 참조.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체결시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들은 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회사, 투자, 투자자, 수익 등 용어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국민 대신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투자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 남북한이 각자의 협정의 적용지역내에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촉진하며, 투자 또는 투자에 관련된 활동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저해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

셋째, 남북간의 투자를 민족내부의 투자로 규정하고 가급적 국제법적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 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그렇지 못할 경우 대북투자 또는 남북경협전략이 무용지물로 될 수도 있음), 남북간에 필연적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최혜국대우 개념을 사용할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투자보장협정에서는 다른 외국인 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하는 동시에, 협정에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 외국인 보다 우대하는 국내법제를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대북투자의 경우 정치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수용이나 국유화 및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적인 수용 또는 국

유화 뿐만 아니라 위장전술을 동원하여 사실상 수용과 국유화에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유사조치, 가령 중과세와 주식의 강제매각 등의 조치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의 자의적인 행위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된 자본의 회수를 위해서는 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투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에는 수용·국유화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실송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송금 보장과 송금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투자원본, 과실금, 투자관련 차입금, 근로자 임금의 송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투자의 위험분산을 위해 남북간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자기측 투자자에게 투자보험금 등을 지불한 당사자는 투자자가 갖는 청구권 등을 대위(구상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아무리 상세한 규정을 두더라도 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바, 객관적인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항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관행상 투자분쟁 해결은 당사자별로, 즉 (1)계약당사자(사인)간 분쟁해결의 경우, (2)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의 국민간 분쟁해결의 경우, (3)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간 분쟁의 경우로 나누어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바, 남북한간에도 이와 같이 차별적으로 접근하여 분

쟁해결방식을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분쟁해결 시 북한의 법원이나 중재기관 외에 제3국의 기관이나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ICSID) 등 국제기관을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이외에도 외국인 직원의 고용보장, 거주 및 상업활동의 보장, 타방투자자의 입경과 체류 및 출경 보장, 사전투자자의 보호, 협정 효력지속(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 협정 종료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나 투자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든가, 타방투자자에게 유리한 다른 법규 등은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

한편 정부는 대북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대북투자보험 내지 수출보험법의 대북한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¹²⁾

IV. 남북한간 이익배분 및 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방지문제

남북한간 협력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에 대한 남북간 배분문제와 배분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역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익배분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합작

투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합작투자나 많은 서방국가와 공산권국가와의 협력사업의 선례는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관련 법에서도 투자방식에 따라 수익배분을 달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합영의 경우 투자비율에 의해서, 합작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남북한간 협력사업의 결과 발생한 개인 소득 및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 각자의 국내법을 적용토록 함이 타당하다. 우리측 투자당사자(기업 포함)에게 배분된 이익과 회사직원의 소득은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북한의 관련법(즉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과 동 시행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남북한이 이중과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중 일방에서 조세와 각종 공과금을 부과한 경우 타방에서 이중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고, 이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일반적 관행과 같이 남북한이 정부당국 차원에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¹³⁾ 남북한이 합의서를 체결하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bid.*, pp. 97~136 참조.

12) *Ibid.*, pp. 136~147 참조.

13) 본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 방지에 관한 국내법의 흠결을

여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인적 적용범위), 고정사업장 등 용어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대상 조세의 범위에 부동산 소득, 사업이윤, 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을 포함시키되,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하는데 대한 보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측 지역의 기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자기측 지역의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할 것이다. 단 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원천지의 국내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세율의 경감을 얻도록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우리 세법상 세율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시 조세공제방법이 자본주의국가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있어서도 다소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기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적 부과 제도는 그 본질상 자본주의국가에서 부과되는 조세의 유형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한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때 간접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세법상으로는 간접세에 통상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포함되는데, 북한의 조세체계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간접세 처리문제와 관련, 남북한간에는 반출하는 측에서 면제하고, 반입하는 측에서 각기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조세체계가 상이한 점을 감안, 남북한 당국이 조세체계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해 상대측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양측의 손실을 예방하는 동시에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특이한 것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절세구제조항의 설치에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면제된 외국세액은 그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된 것으로 자국에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항을 남북한간에 있어서 적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대북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나, 이를 허용할 경우 부분별한 북한진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경협 본격화 전에는 절세구제조항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

보완하고, 계약국들이 탈세방지의 측면에서 상호이익이 조정된 경제관계를 국제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남북한간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장려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투자보장협정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된다. 그 대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세법에 대북투자에 대한 특칙을 설정하는 방법에 의해 조세감면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종과세와 관련된 남북한간 분쟁의 경우에도 분쟁해결방식을 정치하게 규정함으로써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하게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¹⁴⁾

V. 한국기업의 특허 또는 상표의 북한 내 보호문제

한국상품의 대북한 반출 또는 한국기업의 북한과의 임가공 교역 내지 합작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자본 및 신용과 직결되어 있는 한국기업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북한내 보호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과거 미국이 구소련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중점사항중의 하나가 '특허 및 상표제도의 서구화'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 및 등록을 인정하는 남북간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특허와 상표를 북한에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일단 한국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북한의 현행제도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상

표가 한국에서 보호받는 수준으로 향상·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기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남북한간에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출원·등록을 인정해 주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자본과 신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의 출원·등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nd Revisions, 일명 파리조약)에 가입해 있고,¹⁶⁾ 파리조약 가맹국간에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내국민대우의 원칙) 제도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북한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발명자증」제도¹⁷⁾를 폐지토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내용을

15) 송만호, "북한의 상표와 특허제도 연구," 「북한」, 1992년 4월호, p. 84.

16) 한국은 1980년 5월 4일, 북한은 1980년 6월 10일 각기 동조약에 가입하였다. 동 조약에 의해 「산업재산권보호동맹」이라는 국제기구가 탄생하였다.

17) 북한의 「발명과 기술혁신에 관한 법」(우리의 특

14) 제성호(1994), pp. 178~181 참조.

특허만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하겠다. 아울러 남북한간에 특허 및 상표의 등록요건(불특허사유 포함)과 이들의 심사기준 통일, 권리보호기간 및 보호내용(국가수용사유 및 침해자 제재수준)의 일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¹⁸⁾

VI.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문제

남북한간에 직교역이 확대될 경우 정부는 민족내부거래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제부역과는 달리 세제상의 혜택 등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북한이 과세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한국이 동종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또는 제3국의 상품이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에 반입되는 경우, 이 때 이미 북한이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남한이 당해 물품의 반입시 다시 조세(관세 포함)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서독은 1960년대에 여러 세법(부가가치세법, 판매세법 등)을 개정함

에 있어 그러한 개정이 내독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1967년에는 서독에서 부가가치세법 실시로 인해 동독기업의 매상고가 줄어들어 내독교역의 거래량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그 세율을 일반 국내거래 물품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게 적용하고, 또 동독에서 서독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소시켜 주는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였다.¹⁹⁾

한편 관세와 관련, 서독은 내독간 교역에 관한 합의서의 제규정들과 서독의 유럽공동체가 입시 로마협약에 부속된 특별문서에서는 단지 '동독내에서 생산 또는 채굴된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²⁰⁾

이상과 같은 조치는 서독이 동독시장을 자신의 시장과 같이 취급하되 양독간 교역의 수지균형을 이루고자 동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0조 3항 4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준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의 혜택에 관해서는

허법에 해당함)은 발명자중으로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허로는 등록받을 수 없는 발명(소위 불특허사유)으로서 화학적으로 획득된 물질, 약품 및 음식물,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 및 원자력기술, 농산물 변종 및 생명공학적인 방법을 통한 동식물 신품종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우리 특허법에서는 원자핵변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과 농사양육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만을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화학물질, 약품, 음식물, 동식물 변종 등은 특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허법 제32조 참조.

18) 송만호(1992. 4), p. 84; 한편 북한의 특허제도와 상표제도에 관해서는 송만호, "북한 특허법과 상표제도", 「조선법률신문」, 1992년 8월 17일 4면 참조.

19) 이태욱, "동서독 경제교류경험의 한반도 원용가능성 연구," 「정책연구」, 통권 제100호 (1990), p. 187.

20) Zoll und Verbrauchsteuern, Nr. 12/1982, p. 364; 황적인 외, 「동서독간의 통행·통신·통상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48 참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부가가치세가 감면을 인정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피준용 법률을 열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준용되는 조문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전반적으로 준용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²¹⁾

Ⅶ. 결론

이상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할 약간의 중요한 법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해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외에도 남북한간에 발생할 법적 문제점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점들 중에는 남북한 정부 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청산거래, 투자보장이나 이종과세 방지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 당국간의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원활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에도 남북한간에 직교역과 대북투자가 확대될 경우 민족내부거래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제무역과는 달리 세제상의 혜택 등 남북교역의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대북투자에 따른 리스크

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대북투자보험 내지 수출보험법의 대북한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정부당국이 만나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장장치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진출 기업들이 북한측과의 합작투자계약 체결시 불가항력조항이나 분쟁해결조항 등 관련조항들을 정치하게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또는 판로의 확보, 투자자금의 다변화 등의 방식에 의해 스스로 투자보장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직교역이나 합작투자를 확대해 나갈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제기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 인정문제나 미국의 통상관계법들이 남북한간의 합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그러한 국제적 규제 내지 외국법의 역외적용이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강구·추진함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앞당기며 평화로운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1) 이에 대한 보완방향에 관해서는 박윤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과 그 발전방향,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점 및 대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1992. 9. 25), p. 34 참조.

<북한기행>

경희의 리자 이남과 도희

經協

勞作

ART가이 →

